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-167호

#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수도공급설비) 결정(경미한 변경) 지형도면 정정고시

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-57호(2023. 3. 20.)로 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수도공급설비) 결정(경미한 변경)·지형도면 고시한 내용 중 지형도면에 오기사항이 있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(☎032-440-1713), 중구청 도시계획과(☎032-760-7517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
2023. 7. 10.

## 인 천 광 역 시 장

### 1. 정정사유

-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수도공급설비) 결정(경미한 변경) 지형도면상의 착오로 작성된 도시계획시설의 경계 정정

※ 금회 정정고시 내용 이외의 부분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-57호(2020. 3. 20.)로 고시된 『도시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사업 실시계획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수도공급설비) 결정(경미한 변경)·지형도면 고시』 내용과 같음

### 2. 지형도면(정정) : 게재 생략(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)

- 토지이음서비스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